

제5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

● **종류주식의 전환권 부여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정관 변경**

최초 통지(3/13) 정관 개정(안)	금번 수정 통지 정관 개정(안)	변경 사유
<p>제8조의 4 (전환주식)</p> <p>1. 회사는 제8조의2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, 다음의 각 호에 의해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.</p> <p>2. 회사는 다음 각 항에 의거 주주의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.</p> <p>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며, 전환 비율은 주식발행 시 회사의 재무상황, 영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, 전환조건,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③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,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④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선택하여 전환할 수 있다.</p> <p>가.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관사, 한국거래소, 명의개서대리인 등 상장 이해관계자가 상장 필수사항으로 요구하는 경우</p> <p>나. 종류주식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어서 유통이 제한 또는 저해되어 주주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</p> <p>다. 제8조의2에 의한 종류주식의 잔여재산 분배권 등 보통주식 대비 실질적 가치 및 효력이 미비한 경우</p> <p>3. 주주는 다음 각 항에 의거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며 전환 비율은 주식발행 시 회사의 재무상황, 영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, 전환조건,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,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8조의 4 (전환주식)</p> <p>1. 회사는 제8조의2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, 다음의 각 호에 의해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.</p> <p>2. 회사는 다음 각 항에 의거 주주의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.</p> <p>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며, 전환 비율은 주식발행 시 회사의 재무상황, 영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한다.</p> <p>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, 전환조건,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.</p> <p>③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2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. 다만,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,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④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선택하여 전환할 수 있다.</p> <p>가.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관사, 한국거래소, 명의개서대리인 등 상장 이해관계자가 상장 필수사항으로 요구하는 경우</p> <p>나. 종류주식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어서 유통이 제한 또는 저해되어 주주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</p> <p>다. 제8조의2에 의한 종류주식의 잔여재산 분배권 등 보통주식 대비 실질적 가치 및 효력이 미비한 경우</p> <p>3. 주주는 다음 각 항에 의거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며 전환 비율은 주식발행 시 회사의 재무상황, 영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한다.</p> <p>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, 전환조건,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.</p> <p>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2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. 다만,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,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</p>	<p>과거 기 발행한 종류주식을 포함하기 위한 정확한 문구 표기 및 유권해석의 명확화</p> <p>회사 이사회 대신 전체 주주가 참여하는 주주총회 결정을 통한 주주 권리 및 이익 보호</p> <p>최초 발행한 종류주식의 발행일이 조만간 10년을 초과함에 따라 전환기간을 추가 확대</p> <p>회사 이사회 대신 전체 주주가 참여하는 주주총회 결정을 통한 주주 권리 및 이익 보호</p> <p>최초 발행한 종류주식의 발행일이 조만간 10년을 초과함에 따라 전환기간을 추가 확대</p>